

# 제1714호

2019. 8. 1.(목)

발행인 : 영등포구청장  
편집인 : 홍보전산과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전화 : 02-2670-7554

# 영등포구보

### 규 칙

- 제76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
- 제76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2

### 고 시

- 제2019-116호 영등포구 빈집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계획 고시[연장] ..... 3
- 제2019-119호 도로명주소 부여, 변경, 폐지 고시 ..... 4

### 공 고

- 제2019-1270호 영등포구 빈집 실태조사를 위한 출입 공고[추가] ..... 6
- 제2019-1273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공고 ..... 8
- 제2019-1278호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람공고 .....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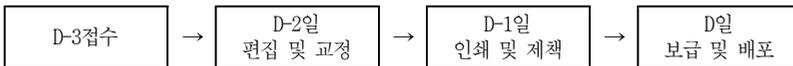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영등포구홈페이지<<http://www.ydp.go.kr>. (행정정보→행정자료→영등포구보)>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및 편집문의 (☎02-2670-7554 / 전송 : 02-2670-3581)

◎ 구보발행일은 매주 목요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 발행, 공포 등 필요시 발행일 조정 가능)

◎ 구보게재접수는 D-3일(월요일)까지 접수



영등포구 발간등록번호

3180194-0067-2019

**규 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채 현 일  
2019년 8월 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규칙 제76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주민등록번호와” 를 “생년월일과” 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정에 따라” 를 “규정에도 불구하고” 로 한다.

제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청장은 해당사업연도 종료 후 6월 이내에 공단의 결산감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를 지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채 현 일  
2019년 8월 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규칙 제764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중 “이자수입금 범위” 를  
“적립금 및 해당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b>고 시</b>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9-116호

## 영등포구 빈집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계획 고시[연장]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영등포구 관내 빈집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실시 전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조사취지 : 추정되는 빈집의 실질 거주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및 지속적인 관리체계 마련
2. 법적근거 :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시행령 제8조
3. 조사기간 : 2019. 03. 14. ~ 2019. 09. 20.
4. 조사대상 : 영등포구 관내 빈집으로 추정되는 곳

[빈집 추정기준(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제2018-103호))]

구분	추정 사용량
전기사용량	1.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10 kWh 이하인 상태로 지속되는 경우 2.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동일하게 지속되는 경우 3. 최근 12개월 동안 사용량의 합계가 120 kWh 이하인 경우 4. 전기계량기가 사용이 중지된 상태로 최근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상수도사용량	1.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0(단수)인 상태로 지속되는 경우 2.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동일하게 지속되는 경우
기타 에너지	위에 준하는 경우

5. 조사의 내용(법 제5조)
    - 빈집 여부의 확인
    - 빈집의 관리 현황 및 방치기간
    - 빈집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현황
    -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
    - 그 밖에 빈집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대행전문기관 : 한국감정원
-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영등포구청 도시재생과(☎02-2670-3526) 및 한국감정원 도시재생지원처(☎053-663-85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9-119호

## 도로명주소 부여, 변경,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25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1길 9 (도림동)외 4건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2670-3724)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 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도로명주소 부여 조서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3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1길 9 (도림동)	2019-08-01	2010-05-27	영신로에서 분기되는 도로로 해당 일련번호 활용	신규 부여

■ 도로명주소 변경 조서

연번	종전 지번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비고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5가 120-6, 120-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사길 3 (양평동5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사길 3 (양평동5가)	-	-	변경없음(양평 동5가 120-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사길 5 (양평동5가)	2019-08-01	건물군 분리	변경(양평동5가 120-9)

■ 도로명주소 폐지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고시일	비고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1길 9 (도림동)	2019-07-25	2019-08-01	건물 철거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1로 37 (양평동3가)	2019-07-29	2019-08-01	건물 철거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봉로20길 6 (신길동)	2019-07-29	2019-08-01	건물 철거

<b>공 고</b>
------------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 제2019-1270호

## 영등포구 빈집 실태조사를 위한 출입 공고[추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 영등포구 관내 빈집 실태조사를 위하여 빈집 등에 출입 허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사 업 명 : 서울시 전지역 빈집실태조사 용역
2. 출입목적 : 빈집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수행
3. 출입기간 : 2019. 08. 01. ~ 2019. 09. 20.
4. 출입자소속 : 한국감정원
5. 출입할 건물소재지 : 별첨목록
6. 공고기간 : 2019. 08. 01. ~ 2019. 09. 20.

[빈집 추정기준(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제2018-103호))]

구분	추정 사용량
전기 사용량	1.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10 kWh 이하인 상태로 지속되는 경우 2.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동일하게 지속되는 경우 3. 최근 12개월 동안 사용량의 합계가 120 kWh 이하인 경우 4. 전기계량기가 사용이 중지된 상태로 최근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상수도 사용량	1.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0(단수)인 상태로 지속되는 경우 2.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동일하게 지속되는 경우
기타 에너지	위에 준하는 경우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영등포구청 도시재생과(☎02-2670-3526) 및 한국감정원 도시재생지원처(☎053-663-85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입할 건물소재지 목록(추가)

구분	빈집주소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2가 48-28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4가 1-96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4가 1-100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4가 32-45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118-1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202-17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202-90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202-91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7-33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77-1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77-23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77-47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82-8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225-33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225-43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226-36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226-106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276-10
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324-37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33-4
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3669
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051
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603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 제2019-1273호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하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내용

연번	인증번호	상 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1	서울영등포 제6-1-13호 (2019년)	오택오티스파킹시 스템(유) 강성희	PM2D-80AIK -SB55	승강기식 횡식 중간승입식 80대형 【수용차량: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	2019. 7.23.

○문의: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 ☎02-2670-4286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 제2019-1278호

##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411호(2005.12.22.)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영등포지역) 변경결정 및 영등포1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8호(2010.01.21.)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71호(2013.01.03.)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26호(2015.07.30.)로 정비구역 해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8호(2016.01.14.)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48호(2017.04.27.)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77호(2017.05.25.)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80호(2017.08.03.)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2호(2018.01.18.)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55호(2019.05.23.)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변경(안)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 8월 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공람기간 : 2019. 8. 1 ~ 2019. 8. 16
2. 공람장소 : 영등포구청 도시재생과(☎02-2670-3528)
3. 공람사유 : 영등포1-3구역 영등포시장역 2번 출입구 설계변경 반영에 따른 철도시설 변경 및 1-4구역 공공지 시설변경(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청사, 주차장)
4. 공람내용
  -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변경없음)
  - 나. 재정비촉진계획의 목적(변경없음)
  - 다.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연도(변경없음)
  - 라.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변경)
    -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명 칭	면적(㎡)			비율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44,594.0	-	144,594.0	100.0	
도시계획 시설	소 계	49,502.2	-	49,502.2	34.2	
	도 로	37,919.5	-	37,919.5	26.2	
	광 장	1,446.0	-	1,446.0	1.0	
	공 원	8,423.9	-	8,423.9	5.8	
	공공공지	1,712.8	감)1,712.8	-	-	
	공공청사	-	증)1,712.8	1,712.8	1.2	※중복결정 · 지상: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 지하:주차장
	(사회복지시설)	-	증)1,712.8	1,712.8		
	(주차장)	-	증)1,712.8	1,712.8		
주 상 복 합		59,836.7	-	59,836.7	41.4	
상 업 복 합		32,257.1	-	32,257.1	22.3	
종 교 시 설		2,998.0	-	2,998.0	2.1	

- 2)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없음)
- 3)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

구 분	개 소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도 로	16	37,919.5	-	37,919.5	
공 원	2	8,423.9	-	8,423.9	
광 장	1	1,446.0	-	1,446.0	
공공공지	1	1,712.8	감)1,712.8	-	
공공청사	1	-	증)1,712.8	1,712.8	· 중복결정(주차장,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1	-	증)1,712.8	1,712.8	· 중복결정(주차장, 공공청사)
주차장	중복결정	1	-	증)1,712.8	· 중복결정(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환원	1	860.8	-	860.8

-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존계획(변경없음)
- 5) 교통계획(변경없음)
- 6) 경관계획(변경없음)
- 7)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8) 용도지역 변경계획(변경없음)
-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변경없음)
- 10)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변경없음)
- 11)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변경없음)
- 12)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3)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 계획(변경없음)

마. 재정비촉진구역 지정(변경) 결정 조서(변경)

1) 영등포1-2 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2) 영등포1-3 재정비촉진구역(변경)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3)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변경)

○ 도로(변경없음)

○ 철도(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 장 (m)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2	철도	고속철도 (5호선)	강서구 개화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21일대	-	B=10m L=465m	-	건고695호 '90.10.19	
기정		철도	영등포 시장역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23-1 일대			-	7,002.87	건고695호 '90.10.19	
변경		철도	영등포 시장역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23-1 일대			-	7,012.20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기 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 고
변경	-	철도	영등포동7가 23-1일대	길이	79m	감) 44m	35m	건설부고시 제695호 (90.10.19)	•입체적 결정 범위(출입구 일부) -면적(평면투영면적) 기 정 : 163.81㎡ 변경후 : 172.70㎡ -H = +1.86m ~ +12.89m (해수면기준) •설계변경에 따른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면적 조정
				폭	4.35m	증) 0.15 ~ 0.45m	4.50~4.80m		
				높이	•지상부 •지하부 -도로계획고에서 지하7.38m까지	증) 3.65m	11.03m •지상부(캐노피 상단 0.5m) •지하부(지하 1층 하부슬라브 하단0.5m)		
				층	-	-	-		

※ 철도 입체구역 특정내용 : 지상부(캐노피 상단 0.5m)와 지하부(지하1층 하부슬라브 하단 0.5m)까지는 입체적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고 지하 11.03m 이상부터는 비도시계획시설임.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5) 기존건축물의 정비· 개량 및 건축시설계획(변경없음)

(6)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없음)

- (7)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8)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3)영등포1-4 재정비촉진구역(변경)
  -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2)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명 칭	면적 (㎡)			비율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58,422.1	-	58,422.1	100.0	-
도시계획시설	소 계	19,876.9	-	19,876.9	34.0	-
	역사공원	2,959.4		2,959.4	5.1	
	공공공지	1,712.8	감) 1,712.8	-	-	· 폐지
	공공청사	-	증) 1,712.8	1,712.8	2.9	※ 중복결정 · 지상: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 지하: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	증) 1,712.8	1,712.8		
	(주차장)	-	증) 1,712.8	1,712.8		
	도 로	15,204.7	-	15,204.7	26.0	-
택 지	소 계	38,545.2	-	38,545.2	66.0	-
	1-4-1	35,547.2	-	35,547.2	60.9	-
	1-4-2	2,998.0	-	2,998.0	5.1	· 종교시설

※ 공공공지를 폐지하고 공공청사와 사회복지시설, 주차장(공공청사 지하부)이 중복 결정되며, 토지이용계획 면적변경은 없음.

- (3)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변경)
  - 도로(변경없음)
  - 철도(변경없음)
  - 주차장(신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	1	주차장	영등포동2가 435-4 일대	-	증) 1,712.8	1,712.8	-	· 중복결정 -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1,712.8㎡)

- 공원(변경없음)
- 공공공지(폐지)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 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폐지	1	공공공지	영등포동2가 435-4 일대	1,712.8	감) 1,712.8	-	서울시고시 제2005-411호 (2005.12.22)	-

○ 공공청사(신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	1	영등포동 주민센터	공공청사	영등포동2가 435-4 일대	-	증) 1,712.8	1,712.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복결정</li> <li>- 사회복지시설, 주차장(1,712.8㎡)</li> <li>•건폐율:60%이하</li> <li>용적률:400%이하</li> <li>건물높이:30m이하</li> </ul>

○ 사회복지시설(신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	1	사회복지시설	영등포동2가 435-4 일대	-	증) 1,712.8	1,712.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복결정</li> <li>- 공공청사, 주차장 (1,712.8㎡)</li> <li>•건폐율:60%이하</li> <li>용적률:400%이하</li> <li>건물높이:30m이하</li> </ul>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변경없음)

-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 (5)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변경없음)
- (6)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없음)
- (7)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8)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4) 영등포1-11 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 5) 영등포1-12 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 6) 영등포1-13 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 7) 영등포1-14 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바.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 1)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 2) 용도지구 결정 조서(변경없음)
- 3)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변경)

(1) 교통시설(변경없음)

○ 도로(변경없음)

○ 주차장(신설)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1	주차장	영등포동2가 230	860.8	-	860.8	서영고 2001-69 (2001. 7.6)	
신설	1	주차장	영등포동2가 435-4 일대	-	증) 1,712.8	1,712.8		•중복결정 -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1,712.8㎡)

○ 철도(변경)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 장 (m)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2	철도	고속철도 (5호선)	강서구 개화동	영등포구 여의도동2 1일대	-	B=10m L=465m	-	건고695호 '90.10.19	
기정		철도	영등포 시장역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23-1 일대			-	7,002.87	건고695호 '90.10.19	
변경		철도	영등포 시장역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23-1 일대			-	7,012.20		

(2) 공간시설(변경)

- 광장(변경없음)
- 공원(변경없음)
- 공공공지(폐지)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폐 지	1	공공공지	영등포동2가 435-4 일대	1,712.8	감) 1,712.8	-	서울시고시 제2005-411호 (2005.12.22)	-

(3)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 공공청사(신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영등포동 주민센터	공공청사	영등포동5가 20-69 일대	-	증) 1,712.8	1,712.8	서울시고시 제2005-411호 (2005. 12.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복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시설, 주차장(1,712.8m<sup>2</sup>)</li> </ul> </li> <li>•건폐율:60%이하 용적률:400%이하 건물높이:30m이하</li> </ul>

○ 사회복지시설(신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사회복지시설	영등포동5가 20-69 일대	-	증) 1,712.8	1,712.8	서울시고시 제2005-411호 (2005. 12.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복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청사, 주차장 (1,712.8m<sup>2</sup>)</li> </ul> </li> <li>•건폐율:60%이하 용적률:400%이하 건물높이:30m이하</li> </ul>

(4)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기 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중로 1-7	보행자 전용도로	영등포동7가 109 ~ 영등포동7가 148-4	길이	139m	-	139m	서울시고시 제2005-411호 (2005.12.22)	•공간적범위결정 내용 - 지상부와 지하부의 도로계획고에서 지하 2m까지를 도시계획 시설로 공간적범위 결정
				폭	20m	-	20m		
				높이	•지상부 •지하부 -도로계획고에서 지하 2m까지	-	•지상부 •지하부 -도로계획고에서 지하 2m까지		
				층	-	-	-		
기 정	소로 1-9	보행자 전용도로	영등포동7가 144-17 ~ 영등포동7가 145-7	길이	80m	-	80m	서울시고시 제2005-411호 (2005.12.22)	•공간적범위결정 내용 - 지상부와 지하부의 도로계획고에서 지하 2m까지를 도시계획 시설로 공간적범위 결정
				폭	10m	-	10m		
				높이	•지상부 •지하부 -도로계획고에서 지하 2m까지	-	•지상부 •지하부 -도로계획고에서 지하 2m까지		
				층	-	-	-		
변 경	-	철도	영등포동7가 23-1일대	길이	79m	감)44m	35m	건설부고시 제695호 (90.10.19)	•입체적 결정 범위(출입구 일부)  -면적(평면투영면적) 기 정 : 163.81㎡ 변경후 : 172.70㎡ - H = +1.86m ~ +12.89m (해수면기준) •설계변경에 따른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면적 조정
				폭	4.35m	증)0.15 ~0.45 m	4.50~4.80m		
				높이	•지상부 •지하부 -도로계획고에서 지하7.38m까지	증) 3.65m	11.03m •지상부(캐노피 상단 0.5m) •지하부(지하 1층 하부슬라브 하단0.5m)		
				층	-	-	-		

※ 철도 입체구역 특정내용: 지상부(캐노피 상단 0.5m)와 지하부(지하1층 하부슬라브 하단 0.5m)까지는 입체적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고 지하 11.03m 이상부터는 비도시계획시설임.

- 사. 광고물 관리 계획(변경없음)
- 아.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자. 친환경건축물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차.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카.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없음)

타. 무장에 생활환경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파. 유비쿼터스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하.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 조정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관련 사항: 생략(공람도서와 같음)

5. 관계도서 : 기타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로 같음.

다만,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은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관련부서협의, 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서울시에서 최종 결정되므로 결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